



대한체육회



수신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학생선수 '학교장 확인서' 변경 안내

1. 관련근거: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-4015(2024. 12. 30.)
2.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 적용(2024. 12. 20.)과 관련하여 변경된 '학교장 확인서' 를 우리회에 송부하여 온 바,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최저학력제 시행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4. 교육부 안내 요청사항

가. 학교장 확인서 주요 변경사항

- 최저학력제 확인 여부(0,X) → **최저학력제 적용 여부(V)**
- **[작성방법] 주요 변경 내용**
 - '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제한 사항' 삭제
 - '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시 의무 허용 사항' 추가
 - '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미이수 시 학교장 확인서 발급 불가' 추가

나.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노력 철저

- 1) 학생선수는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 원칙 준수
- 2) **학기초:** 학생선수(개인 활동 포함)와 학부모에게 최저학력제 적용과목, 대회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 안내하고,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
- 3) **학기말:**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하여 도달 여부를 확인 후 미도달 학생에게는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(e-school 등 활용)을 제공하고 의무 이수토록 관리 감독

붙임 학교장 확인서(변경) 1부. 끝.

대한체육회



수신 회원종목단체장_정회원, 회원종목단체장_준회원, 회원종목단체장_인정단체, 시도체육회장

과장 배준익 부장 전결 01/02 김대우

협조자

시행 청소년체육부-4 (2025.01.02.) 접수 대한사격연맹-16 (2025.01.02.)
우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(방이동, 대한체육회) / <http://www.sports.or.kr>
전화 02-2144-8351 /전송 / junik0309@sports.or.kr / 공개